군산시 공고 제2026-2587호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960호 및 제2026-1001호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변경 공고」와 연계하여, 군산시가 설비설치를 지원하는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군산시장

주요 변경 사항

1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연장

○ 당초 '26.9.30.까지 → 변경 '26.12.10.까지

2 지원대상 확대

○ 당초 주택 소유주 → 변경 주택 소유주 및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3 단체 일괄 신청·접수기준 추가, 단체 신청 시 사업비 조정 안내

○ (대상) 동일 공동주택의 여러 세대 또는 법인·기관이 소유한 여러 세대(호)

○ (접수 서류) 사업신청서, 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단지 단위 1건으로 제출

* 참여세대 명세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관리주체 동의서 등

○ (지원 보조금) 단체신청의 국비 보조금액은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산정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괄시공 등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설치위치·시공방법 등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소요(행정)비용을 고려하여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

○ (자부담금 분할) 단체 신청 시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합의한 경우 별도의 약정서에 따라 자부담금 분할 납부 가능

4 기타

○ 사업 세부 내용 및 신청 요건 변경에 따른 제출 서식 수정·신설 등

상기 사항은 주요 변경사항으로, 반드시 공고 전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나. 사 업 량 : 589가구

다. 사업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 군산시 소재이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한 단독 및 공동주택에 한함.

** 법인 · 기관(중앙 · 지방정부 제외)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해당 주택의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라. 사업분야 : 태양광(500W 이내)

마. 사업내용 : 태양광 설비설치 완료 시 보조금 지원

바. 신청기간 : 2026. 12. 10.(목)까지 ※ 2027년 중 설치 예정

2. 지원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동의서 제출 필수

**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관계 확인서류 및 주택 소유주 설치 동의서 또는 원상복구 확약서 제출

3.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 신청자: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내 참여기업 확인 후 직접 선정 및 계약 체결
○ 참여기업: 구비서류를 군산시로 제출**(메일 접수 후 원본 제출)**
※ 기간: 2026. 12. 10.(목)까지

⇩

신청서류 검토
(군산시)

○ 제출 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등

⇩

사업계획서 제출
(군산시 →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 대상 최종 취합 후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선정 결과 안내
(군산시 → 참여기업)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설비설치('27년 중 예정)
(신청자, 참여기업)

○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일 이후 설비설치 착수
○ 신청자: 군산시, 재생에너지센터(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확인(현장 확인) 완료 후 참여기업에 자부담금 송금
※ 임의 설치 및 미참여기업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 지급신청
(참여기업 → 군산시)

○ 참여기업이 구비서류를 군산시로 제출**(방문 및 등기우편)**

⇩

보조금 지급
(군산시 → 참여기업)

○ 보조금 지급기준 적합성 판단 후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

4.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가. 지원기준 : 가구당 500W 이내

○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시공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함.

나. 지원금액

구분	설비용량	지원금액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500W	**총 설치비의 80만원 정액 지원(자부담 20만원)**

※ 설치단가: 500W 기준 100만원(국 40, 도 4, 시 36, 자부담 20)

※ 단체신청의 국비 보조금액은 평가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사업 신청

가. 신청자

○ 신청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내 참여기업* 확인 후 **직접 선정하여 계약 체결**

* **참여기업 확인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접속 → 공지사항 內 '2026년 가정형(베란다) 보급지원 사업 신청 절차 및 참여기업 안내' 게시글 확인(https://nr.energy.or.kr/A0/GN_03/GN_03_00_041.do)

나. 참여기업

○ 신청기간 : 2026. 12. 10.(목)까지

○ 제출방법 : **참여기업이 전자우편(메일)으로 제출하고, 메일 접수 후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 **메일주소** : jess2891@korea.kr
- **제출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8층 신재생에너지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담당자

※ 제출 서류가 미흡 또는 부적합할 경우 보완 완료시점을 접수일로 확정

< 사업 신청 제출 서류 >

1) 개인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호]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공동소유자 포함) 1부.
○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1-2호]
○ (필요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탄소중립포인트) 1부.[서식 1-3호]
○ (공동소유주 또는 임차인의 경우) 소유주 설치 동의서 1부.[서식 1-4호]
○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1부.[서식 1-5호]
○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동의서 1부.[서식 1-6호]
○ (임차인 신청인 경우) 원상복구 확약서 1부.[서식 1-7호]
○ (임차인 신청인 경우) 임대차관계 확인서류 1부.
○ (해당 시) 입주민 의결자료 1부.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및 KS 인증서 1부.

※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 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이 일치하여야 함.

2) 단체사업신청(공동주택의 옥상 등 공용부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신청서 1부.[서식 2호]
○ 참여세대 명세서 1부.[서식 2-1호]
○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서식 2-2호]
* 계약 당사자: (일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 (법인·기관) 소유 법인·기관
○ (해당 시) 자부담금 약정서 1부.[서식 2-3호]
○ 건축물대장 1부.
○ (일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대표자 확인서류 1부.[서식 2-4호]
○ (법인·기관 공동주택)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1부.[서식 2-5호]
○ 관리주체동의서 1부.[서식 2-6호]
○ (필요시) 법인·기관 소유 참여세대 명세서 1부.[서식 2-7호]
○ (해당 시) 법인·기관 소유 세대의 실사용자 동의서 1부.[서식 2-8호]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및 KS 인증서 1부.

※ 단체신청은 개별세대의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음.
※ 신청서 및 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법인·기관 직인 날인

6. 보조금 지급신청(참여기업만 해당)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제출장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8층 신재생에너지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담당자

○ **참여기업**이 아래 서류를 완비하여 군산시청에 제출하면, 검토 후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제출 서류 >

-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서식 3호]
- 준공사진 1부.[서식 3-1호]
-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서식 3-2호]
- 청렴이행서약서 1부.[서식 3-3호]
-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1부.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5년) 사본 1부.

7.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참여기업은 **신청 전에** 반드시 군산시청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 신청자는 설치장소가 공동주택일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여건 등을 확인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선정된 이후 태양광 설비설치 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임차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신청 전에 주택 소유주와 설치장소, 설비 소유·관리, 임대차 종료 시 설비 처리 및 원상회복 비용 부담을 협의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옥상 등 공용부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단체신청의 경우 참여세대 명세서 등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해당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지원된 경우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환수할 수 있음.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은 베란다 외에도 적정 일조량이 확보되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공간에 설치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로 마련되는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포기 시에는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이 사업포기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군산시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신청자는 참여기업 선정 시 설치가능여부, 설치모델, 설치용량, 설치비용, 경제적 효과, 참여기업의 신뢰성, 무상 하자보수조건,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 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 군산시는 설비설치에 따른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분쟁(성능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채무관계 등)과 타 관련 법규상 저촉사항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소음, 빛반사, 그늘짐)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이 없음.

○ 군산시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계약에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 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해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자는 충분히 검토 후 결정 추진하여야 함.

○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양도 및 폐기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1855-3020)에 신고하여야 하며,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의 이전·양도·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자는 이사·임대차 종료 등에 따른 설비 이전·양도·철거 또는 관리주체 변경 전에 센터와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사업지침상 필요한 승인·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참여기업 및 신청자가 허위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군산시는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공고내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변경 공고」를 적용함.

8. 기타사항

○ 태양광 설비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개발계(☎063-454-4425)로 문의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 방법 1부.
2.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참여기업 목록 1부.
3.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1]

사업 참여 신청 방법

①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 사전협의(신청자, 참여기업)

⇒신청자는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 동일 공동주택 등에서 여러 신청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단체대표가 공통사항(설치장소,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전협의에 참여 가능

※ 설치하려는 장소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또는 단체대표가 해당 장소의 사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동의·의결 및 인·허가 사항을 사전에 확인 요망

※ 신청자는 사전협의 시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가능여부, 설치용량,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 요망

⇒참여기업 목록은 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알림뉴스> -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knrec.or.kr/biz/main/main.do)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참여기업, 신청자)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단체신청 중 일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참여세대를 대표(의결 필요)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기관 소유주택은 소유 법인·기관이 표준설치계약서 1부를 체결(단체신청은 모두 참여세대 명세서를 계약서에 첨부)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담금 분할납부는 단체신청(법인·기관 포함)에 한하여 신청자(단체)와 참여기업이 합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분할금액, 납부횟수, 납부기한 및 방법 등 세부조건은 표준설치계약서 또는 별도의 분할납부 약정서에 명시합니다.

※ 자부담금 분할납부는 신청자(단체)와 참여기업 간 민사상 계약으로, 재생에너지센터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의무를 보증 또는 대신 이행하거나 분쟁을 중재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신청서 제출(신청자·참여기업→지방자치단체)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 모집공고 등 지자체 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는 분들은 탄소중립포인트 회원가입 (https://cpoint.or.kr/netzero/main.do) 및 제3자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설치확인 완료 후 포인트 지급)

※ 단체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간소화로 현 사업을 통한 연계는 어려워 추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방안 안내 예정

④ 신청서 검토 및 대상선정(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을 취합합니다.

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지방자치단체, 센터)

⇒지방자치단체는 취합한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 개요, 사업 추진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자별 사업신청서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센터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평가하여 사업을 선정합니다.

⑥ 협약 및 보조금 교부(지방자치단체, 센터)

⇒센터와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약을 맺고 공단은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지자체에 교부합니다.

⑦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참여기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센터)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관해 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설비 설치 완료 후 참여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확인을 완료하면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센터의 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신청자는 참여기업에 자부담금을 지급합니다.

⑧ 하자 접수(신청자)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frsc/

⑨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콜센터(☎ 1855-3020)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재생지원사업처(☎ 052-920-0772, 0773)

[별첨 2]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참여기업 목록

연번	참여기업명	주소(본사)	전화번호
1	㈜이수이엔지	전북 김제시 양지길 6 2층	063-225-3015
2	㈜대한에스엠피	전북 남원시 충정로 42 2층	063-626-9005
3	㈜세원이엔에스	전북 군산시 조촌안1길 19 402호	063-452-6167
4	㈜가온ENC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164 송민빌딩 5층	063-236-9811
5	㈜에스앤지코리아	전북 부안군 행안면 부안3농공단지길 107 2층	063-584-9277
6	(유)우경에너텍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59 1층	063-242-5152
7	㈜대한에스엠피	전북 남원시 충정로 42 2층	063-626-9005
8	(유)새일기술산업	전북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112-59	063-263-1331
9	㈜아이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136	063-211-3656
10	(유)배재토건	전북 익산시 하나로 536 2층	063-832-0020
11	㈜황금전력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6-6	063-856-0009
12	(유)늘푸른에너지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정2길 49	063-263-1939
13	(유)네온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경제통상진흥원 7층	063-213-0740
14	㈜메이저스마트건설	전북 김제시 순동산단길 178	063-548-8804
15	㈜에스더ENG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암실길 8-35 1동	063-212-3490
16	㈜와이제이엔지니어링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남길 6 2층	063-453-2267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 업체의 정부 보급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호] 개인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2쪽 중 제1쪽)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 E-mail : 이동전화 :
주 택 구 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예 상 사 업 비	총사업비: 천원/ 보조 : 천원 / 자부담: 천원
설 치 규 모	가정형 태양광 W(발코니 _____W, 발코니 외 _____W)
참 여 기 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 치 장 소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중복지원 확인	□ 해당 □ 비해당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예정 설치장소 주소(온라인상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한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3. 표준설치계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각 1부
5. (공동소유주 또는 임차인 신청의 경우) (공동)소유주 설치 동의서 또는 원상복구 확약서(임차인), 임대차관계 확인서류(임차인) 1부
6. 관리주체 동의서, 입주민 의결자료(해당 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 참여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및 군산시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

-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

○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에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기준 미준수 등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처분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관련법, 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단, 설비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 설치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반환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업체)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참여기업 (인)

군산시장 귀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조금 지원·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군산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군산시 공고 제2026-2587호의 유의사항	☐
2.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1001호 [별첨1]의 사업 신청 및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참여기업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1-1호] 개인 사업신청 - 표준설치계약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table>
<tr><td rowspan="6">계 약
당사자</td><td rowspan="3">신청자

(□ 소유자 □ 임차인)</td><td rowspan="3"></td><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도로명 주소, 상세주소</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참여
기업</td><td rowspan="3"></td><td>대 표 자</td><td></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도로명 주소</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6">계 약
내 용</td><td>분 야</td><td colspan="2">가정형 태양광</td><td>설치용량</td><td>W</td></tr>
<tr><td>주택구분</td><td colspan="2">□ 공동주택 □ 단독주택</td><td>총사업비</td><td>원</td></tr>
<tr><td>설치유형</td><td colspan="4">□ 난간형(_____ W), □ 난간형 외(_____ W)</td></tr>
<tr><td rowspan="2">설치주소
(도로명주소/
상세주소)</td><td colspan="2" rowspan="2"></td><td>정부지원금</td><td>원</td></tr>
<tr><td>시,도 지원금</td><td>원</td></tr>
<tr><td>설치기간</td><td colspan="2">2026년 월 일 ~ 20 년 월 일</td><td>기초지자체
지원금</td><td>원</td></tr>
<tr><td colspan="3"></td><td>자부담금</td><td>원</td></tr>
<tr><td>본 문
조 항</td><td colspan="5">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신청인 자부담금)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 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 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td></tr>
<tr><td>특 약
사 항</td><td colspan="5">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성 이행)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일조권·조망권 분쟁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td></tr>
<tr><td colspan="6">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인)</td></tr>
</table>

[서식 1-2호] 개인 사업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형 태양광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해당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신청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참여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재생에너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적용됩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여부
필수항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식 1-3호] 개인 사업신청 -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탄소중립포인트)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의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및 인센티브 지급 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확인, 가정형 태양광 설치실적 확인 및 인센티브 지급·관리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 및 제3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3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게 제공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가정형 태양광 설치정보(설치주소·설치용량·설치완료일·설치확인정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가정형 태양광 설치정보(설치주소, 설치용량, 설치완료일, 설치확인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을 합니다.

가.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지원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탄소중립포인트 연계 및 인센티브 지급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여부
필수항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식 1-4호] 개인 사업신청 - 소유주 설치 동의서

<table>
<tr><td colspan="3">(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td></tr>
<tr><td rowspan="3">신청자</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
<tr><td></td><td></td></tr>
<tr><td colspan="2">□ 임차인 □ 공동 소유자</td></tr>
<tr><td rowspan="2">(공동) 소유주</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
<tr><td></td><td></td></tr>
<tr><td rowspan="2">가정형
태양광</td><td>설치위치</td><td>용량(W)</td></tr>
<tr><td>(베란다 난간 등)</td><td></td></tr>
<tr><td colspan="3">위 주택의 (공동) 소유주인 본인은 신청자가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자가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td></tr>
</table>

[서식 1-5호] 개인 사업신청 -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의무)사후관리 점검 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신 청 자 : (연락처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에너지원	설치용량(W)	정부보조금(천원)	참여기업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서식 1-6호] 개인 사업신청 - 관리주체 동의서

관 리 주 체 동 의 서

○ 신 청 인(대표) :

○ 생년월일 :

○ 공동주택(주소) :

○ 전화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발코니 외부 난간, 기타 공용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서식 1-7호] 개인 사업신청 - 임차인 원상복구 확약서

임차인 원상복구 확약서

가정형 태양광	설치위치	(주소)
		(위치) 베란다 난간 등
	용량(W)	

본인은 위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위 장소에 가정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1. 임대차 종료 또는 소유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 비용으로 설비를 철거하고 주택을 원상회복합니다.
2. 설비의 설치·철거와 관련하여 소유주 또는 제3자와 발생하는 민사·형사상 분쟁은 본인이 책임지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확약자(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단 체 명 (단지명/법인·기관)	
단체신청 유형	□ 일반 공동주택 단체신청 □ 법인·기관 소유주택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 E-mail : 이동전화 :
주 택 구 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예 상 사 업 비	총사업비: 천원/ 보조 : 천원 / 자부담: 천원
신 청 범 위	참여 세대수 : _____ 세대
설 치 규 모	가정형 태양광 W
참 여 기 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 치 장 소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중복지원 확인	□ 해당 □ 비해당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참여세대 명세서 1부
2. 표준설치계약서 1부(일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법인·기관은 소유 법인·기관 명의)
3. 자부담금 약정서 1부(해당 시)
4. 건축물대장 1부

 * 단체신청 : 설치 위치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 표제부

 * 예정 설치장소 주소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

5. (일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대표자 확인서류 1부
6. (법인·기관 공동주택)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법인·기관 소유 세대의 실사용자 동의서(해당 시) 1부
8.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관리주체 동의서 각 1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 참여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및 군산시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

-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

○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에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기준 미준수 등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처분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관련법, 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단, 설비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 설치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반환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업체)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참여기업 (인)

군산시장 귀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조금 지원·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군산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군산시 공고 제2026-2587호의 유의사항	☐
2.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1001호 [별첨1]의 사업 신청 및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참여기업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2-1호] 일반 공동주택 단체신청 - 참여세대 명세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단체신청 참여세대 명세서

단 지 명	
단 지 주 소	우편번호( )
신 청 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 연락처 :)
참 여 세 대	총 _____ 세대 / 총 지원용량 _____ W (세대당 500W 이내)
설 치 위 치	

< 참여 세대 확인 사항 >

참여 세대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세대당 1인이 명세서의 해당 칸에 체크 후 서명합니다.

① (참여) 본인은 해당 세대를 대표하여 단체신청 참여에 동의합니다.

② (개인정보) 사업 신청·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성명, 동·호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필수, 보유기간 30년, 동의 거부 시 참여 불가

③ (중복지원) 과거('16~18) 기후부(舊 산업부) 예산이 포함된 보조금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해당 세대에 현존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환수에 이의가 없습니다.

순번	동·호수	성명 (세대 대표)	지원용량 (W)	참여 동의	개인정보 동의(필수)	중복지원 비해당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참여 세대 및 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인)

※ 행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이어 작성하며, 서명 원본은 신청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서식 2-2호] 단체신청(공통) - 표준설치계약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table>
<tr><td rowspan="6">계 약
당사자</td><td rowspan="3">신청자
(대표자)</td><td rowspan="3">□ 입주자대표회의
□ 법인·기관
(명칭 :)</td><td>사업자(고유)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도로명 주소, 상세주소</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참여
기업</td><td rowspan="3"></td><td>대 표 자</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3">도로명 주소</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6">계 약
내 용</td><td>분 야</td><td colspan="3">가정형 태양광</td><td>설치용량 / 참여세대</td><td colspan="2">W / 총 000 세대</td></tr>
<tr><td>주택구분</td><td colspan="3">□ 공동주택 □ 단독주택</td><td>총사업비</td><td colspan="2">원</td></tr>
<tr><td>설치주소
설치위치</td><td colspan="6">(주소) 도로명주소/상세주소
(위치)</td></tr>
<tr><td>정부지원금</td><td>원</td><td>시,도
지원금</td><td>원</td><td>기초지자체
지원금</td><td>원</td><td>자부담금</td><td>원</td></tr>
<tr><td>설치기간</td><td colspan="7">2026년 월 일 ~ 20 년 월 일</td></tr>
<tr><td>본 문
조 항</td><td colspan="8">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신청인 자부담금)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과 합의한 경우 별도의 "자부담금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 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 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관리주체는 사본을 보관한다.</td></tr>
<tr><td>특 약
사 항</td><td colspan="8">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성 이행)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일조권·조망권 분쟁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 (단체신청의 대표 및 승계) ① "신청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 회장이, 법인·기관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자"를 대표한다.
② "신청자"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변경된 대표자, 구성원에게 승계되며,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자"는 후임 관리주체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설비가 설치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제2항의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참여 세대의 명세는 참여세대 명세서에 따르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td></tr>
</table>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인)

[서식 2-3호] 단체신청(공통) - 자부담금 약정서

<table>
<tr><td colspan="2">자부담금 약정서(단체신청용)</td></tr>
<tr><td rowspan="4">신청자</td><td>단지명(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법인·기관명 :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td></tr>
<tr><td>(대표, 성명) (연락처 : 000-0000-0000)</td></tr>
<tr><td>(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000-0000-0000)</td></tr>
<tr><td>(설치주소)</td></tr>
<tr><td rowspan="3">참여기업</td><td>기관명 :</td></tr>
<tr><td>납부 방법 : □ 일시납 □ 00 개월 분납</td></tr>
<tr><td>승인자: 결정일:</td></tr>
<tr><td colspan="2">자부담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 명시</td></tr>
<tr><td colspan="2">※ 자부담금 분할납부 유의사항
① 자부담금 분할납부는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② 납부금액, 납부방식,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등 세부 조건은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직접 협의하여 별도 서면으로 정하고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센터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할납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세부 납부조건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납금의 지급이나 회수를 보증하거나 대납하지 않습니다.
④ 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미납·납부지연에 따른 미수금 관리 및 대금 회수는 참여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⑤ 분할납부와 관련한 분쟁 및 약정 변경은 신청단체와 참여기업이 직접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인)</td></tr>
</table>

[서식 2-4호] 일반 공동주택 단체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단 지 명(주소) :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 (연락처 :)

○ 의결 일자 :

○ 구성원 : 명 / 출석 : 명 / 찬성 : 명

○ 참여 세대수 : 세대(참여세대 명세서 첨부)

○ 설치위치 :

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단체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단지에 가정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
2.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자로서 표준설치계약(분할납부 시 자부담금 약정 포함)을 체결하는 것
3. 참여세대 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
4. 설비의 관리, 의무사후관리 협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의 처분 제한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자·구성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되어도 그 의무는 승계됨

2026. .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 첨부 : 대표자 확인서류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서식 2-5호] 단체신청(공통) -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자(참여세대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 또는 법인·기관) 및 관리주체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의무)사후관리 점검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신청자 또는 관리주체 : (연락처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설치위치	설치용량(W)	정부보조금(천원)	참여기업

년 월 일

신청자(관리주체) : (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서식 2-6호] 단체신청(공통) - 관리주체 동의서

관 리 주 체 동 의 서

○ 신 청 인 : (대표자 :)

□ 입주자대표회의 □ 법인·기관

○ 참여 세대수 : 세대

○ 공동주택(주소) :

○ 전화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서식 2-7호] 법인·기관 소유 공동주택 단체신청 - 참여세대 명세서(필요시)

구분	동·호수	사용 형태 (임대/직접)	설치위치 (난간/난간 외)	용량 (W)	총사업비 (천원)	자부담 (천원)	납부방식 (일시/분납)	실사용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서식 2-8호] 법인·기관 소유 공동주택 단체신청 - 실사용 세대 설치·사용 및 점검 협조 동의서

법인·기관 소유주택 실사용 세대 설치·사용 및 점검 협조 동의서	
소유 법인·기관명	
법인·기관 대표자	
설치 세대(호) 주소	
설치 용량(W)	
실사용자	성명 : 연락처:

본인은 위 세대(호)의 실사용자로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구 분	내 용	동의 여부
1	해당 세대(호)에 가정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2	현장조사, 공사,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하자점검을 위한 출입과 일정 협의에 협조합니다.	□ 동의 □ 비동의
3	사업 신청, 설치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정보를 조회·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4	설비의 설치계약 당사자와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소유 법인·기관이며, 본 동의서는 신청권·보조금 수령권 또는 계약체결권을 실사용자에게 이전하거나 위임하는 서류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동의 □ 비동의
5	실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소유 법인·기관 또는 현장관리자에게 알리고 설비 사용·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는 데 협조합니다.	□ 동의 □ 비동의

년 월 일

실사용자: (서명)

소유 법인·기관 확인: (직인)

참여기업 확인: (직인)

[서식 3호]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table>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5"></td></tr>
<tr><td>설 치 기 간</td><td colspan="5"></td></tr>
<tr><td>설 비 종 류</td><td colspan="2"></td><td>설 비 규 모</td><td colspan="2"></td></tr>
<tr><td>설 치 장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총 사 업 비</td><td>계</td><td>국 비</td><td>도 비</td><td>시 비</td><td>자부담</td></tr>
<tr><td>원</td><td>원</td><td>원</td><td>원</td><td>원</td></tr>
<tr><td>신 청 금 액</td><td colspan="5">총 원(국비 원, 도비 원, 시비 원)</td></tr>
<tr><td>시 공 기 업</td><td colspan="2"></td><td>담 당 자 및
연 락 처</td><td colspan="2"></td></tr>
<tr><td>보 조 금
수 령 계 좌</td><td colspan="2"></td><td>은행명</td><td></td><td>예금주</td><td></td></tr>
</table>

위와 같이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방보조금 지급신청을 위한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참여기업 (인)

군 산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1. 준공사진 1부.
2.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3. 청렴이행서약서 1부.
4.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1부.
6.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5년) 사본 1부.

[서식 3-1호]

준 공 사 진

○ 설치장소:

<table>
<tr><th>구분</th><th>설치 전</th><th>설치 후</th></tr>
<tr><td rowspan="2">근경
(내부)</td><td rowspan="2"></td><td>※ 명판</td></tr>
<tr><td></td></tr>
<tr><td></td><td>※ 촬영일자:</td><td>※ 촬영일자:</td></tr>
<tr><td rowspan="2">원경
(외부)</td><td></td><td></td></tr>
<tr><td>※ 촬영일자:</td><td>※ 촬영일자:</td></tr>
</table>

※ 내부 사진은 명판부착 후 촬영 / 외부 사진은 동·호수가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서식 3-2호] 자체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table>
<tr><td colspan="8">자체 설치확인 보고서</td></tr>
<tr><td colspan="8">가정형 태양광 지원 사업</td></tr>
<tr><td rowspan="3">신청자</td><td rowspan="2">기관명
(성명)</td><td colspan="2" rowspan="2"></td><td>전화</td><td colspan="3"></td></tr>
<tr><td>이동전화</td><td colspan="3"></td></tr>
<tr><td>E-mail</td><td colspan="2"></td><td>FAX</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3">설치장소</td><td rowspan="2">기관명
(성명)</td><td colspan="2" rowspan="2"></td><td>관리자</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E-mail</td><td></td><td>Fax</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3">시공자</td><td rowspan="2">시공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td><td colspan="2" rowspan="2"></td><td>대표자</td><td>(인)</td><td>연락처</td><td></td></tr>
<tr><td>주소</td><td></td><td>Fax</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6">□□□□□</td></tr>
<tr><td>에너지원</td><td colspan="2">태 양 광</td><td>용량</td><td colspan="4"></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7">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 colspan="8">상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확인 기준 준수 등 현장점검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설치확인기준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 (인)

*자체설치확인 현장확인자 : (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td></tr>
<tr><td>첨부</td><td colspan="7">『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td></tr>
</table>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개정 시 개정사항 적용 필요

1.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현장점검표(안)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위 치	□ 표준 난간 □ 비표준 난간 □ 거실 발코니 난간 □ 방 발코니 난간 □ 기타( )					
설치 경사각 및 방향	모듈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거치대 결속 지점	□ 난간상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난간하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기타( ) : 결속지점 (개소) □ 비표준 난간 시공시 추가 안전장치 설치 (개소)					
모듈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총 설치용량	모듈	W	인버터	W		
계통연계 방식	□ 콘센트연결형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 시 분
	인버터 출력	W (시 분)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모듈 후면 또는 측면	명판 모델, 용량 확인	○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각 및 음영 발생	모듈 전면	육안 확인	○ 발전량 저해 예상 ○ 아랫집 등 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2	지지대	설치 상태	난간부,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 난간 상하부 가로대에 4지점 이상 결속 ○ 결속 시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 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해야 하며,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볼트 직하부에 와셔 등을 사용하여 조립 여부 ○ 볼트 결속부 STS밴드 추가 체결	□ 적합 □ 부적합 □ 제외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 거치대와 모듈 결속 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 볼트 체결하여 지지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 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 여부 ○ 비표준난간 추가 안전장치 설치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난간부, 거치대 후면	육안 확인	○ 결속 부속품(볼트,너트,와셔, STS밴드 등) STS 재질 사용 ○ 절단, 용접 부위 방식 처리 ○ 도면과 다름없음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설치상태	지지대 후면	○서류 및 육안 확인	○건축구조기준 등의 관련 기준에 맞게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 진동, 충격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설치 ○모듈과 지지대의 고정볼트는 모듈 제조사 권장 규격 적용,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 균열 발생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용접부위 포함)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Mill Sheet 확인	○재질 확인 - 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합금도금 - 스테인리스 스틸 - 알루미늄 합금 ○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해당 시) ○절단면,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합금재질 사용(볼트캡은 플라스틱 재질도 가능) ○제규격의 볼트, 너트, 스프링와셔 삽입(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 배선	모듈 후면	육안 확인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 (내구성) 재질의 타이) ○ 가공전선로 지지물 설치 ○ 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 배선 보호를 위해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에 전선처리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결속	커넥터	결속확인	○ 모듈과 인버터의 커넥터 부분의 결속 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케이블	설치장소	육안 확인	○ 가능한 음영지역,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 ○ 가능한 피뢰 도체와 떨어진 상태로 포설, 피뢰도체와 교차시공하지 않도록 설치 ○ 바닥에 노출되는 경우 몰딩 등의 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접속함	접속함	육안 확인	ㅇ KS 인증제품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설비 이상(異常)현상 시 경보등 또는 경보장치 켜지는지 확인(실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ㅇ 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접근 및 육안확인 용이한 장소 설치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인버터	사양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 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 사양 명판 표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상태	설치 방향	인버터 설치 방향	○ 전선 인입구 하향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명판	표시항목	모듈 뒷면 우측하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	육안 확인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제작 및 인버터 전면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모니터링 대상설비	정상작동	인버터	육안확인	[별표 2]「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ㅇ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등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가동상태 운전교육	정상 조건	인버터, 전력량계 등	육안 확인	○ 소비자와 가동 상태 확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운전 매뉴얼	점검현장	신청자와 면담	○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서식 3-3호]

청 렴 이 행 서 약 서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참여기업 (인)

군산시장 귀하